

2023년 인명구조사(1급) 자격시험 시행 공고

「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3년 인명구조사 1급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18일

소방청장

I . 시험개요

1 시험일정

가. 공고일자: 2023. 8. 18.(금) / 119고시 누리집

※ 부산소방학교(부산, 울산, 경남, 창원)는 인명구조사 1급 자격시험 별도 공고 및 시행

나. 세부일정

원서접수(필기·실기)	필기시험	필기 합격발표	실기시험	최종 합격발표
9.1.(금)~9.6.(수) 119고시	9.23.(토) 전국 중앙소방학교, 제주 제주소방교육대	10.6.(금) 119고시	10.31.(화)~11.10.(금) 전국 중앙소방학교	11.17.(금) 119고시

※ 원서접수 결과 응시인원 등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 시행할 수 있음

2 응시자격

가. 응시대상: 소방공무원

나. 응시자격: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구분	응시자격
필기시험	<p>①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하고 인명구조사 1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 받은 사람 ②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하고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3년이 경과한 사람 ※ 근무경력은 파견·휴직, 직위해제 등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경력을 말함 ※ 기준일은 필기시험 전일로 함</p>
실기시험	<p>①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필기시험 면제자: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년까지 응시가능 * 2년의 기준은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로부터 원서접수일(시작일)까지로 함 ③ 응시기한이 도래한 해에 시험이 시행되지 않은 사유로 응시기한이 경과 된 경우 이 어지는 실기시험 1회까지는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함</p>

II . 원서접수 (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)

1

원서접수 (119고시 인터넷 접수만 가능)

필기시험 면제자도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실기시험 응시 가능

가. 접수기간: 9. 1.(금) 10:00 ~ 9. 6.(수) 18:00

※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, 접수취소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

나. 접수대상: 응시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

※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을 무효로 처리함

다. 접수방법: 119고시(<http://119gosi.kr>) 접수

라. 접수확인: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확인(로그인 → 마이페이지)

원서접수 유의사항

- 사진기준: 반명함(3cm×4cm), 사진 파일(JPG, GIF, PNG, DMP), 해상도(100DPI 이상)
- 사진등록: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* 등록 시 불이익 발생
 - * 배경이 있는 사진, 스냅사진,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, 얼굴이 잘려 나온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
- 응시자 개인정보 불일치(허위, 오기, 누락), 연락 불능, 응시자격 미충족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- 시험실시권자는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응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

2

응시자격 조회

가. 조회기간/대상: 9. 11.(월) ~ 9. 15.(금) / 원서접수자

※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동의 절차 진행

나. 조회기관: 소방청(교육훈련담당관) 및 응시자 소속기관

다. 조회내용: 교육수료, 인명구조사 2급 취득일, 부정행위* 등

※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, 시험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

라. 조치사항: 응시자격을 미충족한 사람은 자격시험 불가 조치

3

응시표 출력

가. 출력일시: 9. 18.(월) 14:00 ~

나. 출력대상: 원서접수자

다. 출력방법: 119고시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응시표 출력

1

필기시험

- 가. 장소공고: 9. 18.(월) 14:00 예정 / 119고시 누리집
- 나. 시험일시: 9. 23.(토) 10:00 ~ 10:40 (40분) ※ 09:30분까지 입실 완료
- 다. 시험장소: 중앙소방학교 및 제주소방교육대 예정(응시인원에 따라 결정)
- 라. 시험대상: 인명구조사 1급 필기시험 응시자
- 마. 준비물: 응시표, 신분증, 필기도구(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)
- 바. 시험범위: 인명구조사 1급 교범 및 문제은행* 内
* 2022.7.1.부터 문제은행 비공개 운영
- 사. 시험문항: 객관식 4지 1선택형 40문항(비공개 40)
※ 필기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는 전량 회수 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간 보관

2

출제문제 문의

- 가. 운영기간: 9. 23.(토) 15:00 ~ 9. 24.(일) 18:00
- 나. 문의방법: 원서접수사이트 119고시에서 신청
- 다. 문의절차: 로그인 → 질의응답 → 문의서 첨부*
* 응시자는 인명구조사 필기시험문제 문의서 작성 첨부
- 라. 문의내용: 출제문제 오류, 복수정답, 정답없음 등 문의
* 시험문제 공개 요구 또는 전화 문의는 받지 않음

3

필기시험 합격자 공고

- 가. 공고일시: 10. 6.(금) 14:00
- 나. 공고장소: 119고시 누리집
- 다. 공고내용: 필기시험 합격자 및 실기시험 일정 등
- 라. 합격기준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
※ 필기시험 합격자는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 통보(응시번호, 이름, 소속, 연락처 등)

IV. 실기시험 (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)

* 세부추진계획 별도 수립

1

실기시험 희망일 파악 [원서접수시 선택]

가. 신청기간: 9. 1.(금) 10:00 ~ 9. 6.(수) 18:00 (원서접수 시)

나. 신청방법: 119고시 접수

다. 신청대상: 원서접수자

※ 미신청자 및 신청일 미배정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임의배정(확정 후 변경 불가)

2

실기시험

가. 시험기간: 10. 31.(화) ~ 11. 10.(금) ※ 응시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나. 시험장소: 중앙소방학교

다. 응시대상: 필기시험 합격자, 필기시험 면제자

라. 실기항목: 수상인명구조 등 구조기술평가 9개 항목

구 분		*평 가 항 목	
구조기술 평가	수난구조	①중량물 들고 떠 있기 ③수상인명구조	②스킨 탈부착 후 인양작업 ④수중구조
	로프구조	⑤구조대원1 ~ 구조대원4	* 평가관 지정 또는 추첨
	화학구조	⑥유해물질 대응. I	⑦유해물질 대응. II
	도시탐색	⑧구조물 안정화	⑨중량물 인양 및 이동

마. 준비물품: 응시표, 신분증, 개인장비, 실기평가표*

* 실기평가표에 응시번호, 성명, 자필 서명 기재 후 시험운영본부 제출

바. 합격기준: 세부항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항목별 40점 이상

득점하고, 전 항목 평균은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함

V. 최종합격자 공고 (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)

가. 공고일시: 11. 17.(금) 14:00

나. 공고방법: 119고시 게시

VI. 기타 안내사항

1 일반사항

가.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
신분증 인정 등 유의사항

- ▶ 인정: 소방공무원증,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, 운전면허증, 기간만료 전 여권
 - ▶ 불인정: 자격수첩,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, 신분증 사진
- ※ 응시표 출력 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지참할 것

나. 응시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(이후 입장 불가), 공고된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 포기로 간주함

시험장 폐쇄시간 및 유의사항

- ▶ 시간 기준: 10:00 시험은 09:00에 개방하여 09:30:00까지 입장 가능
09:30:01부터 시험실시 건물 주 출입구 폐쇄
- ▶ 입구 기준: 자격시험기관이 지정한 출입구 기준
- ▶ 응시자는 시험장의 위치, 교통편, 이동 소요 시간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, 시험 전날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음
- ▶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이 불가함

다. 시험공고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119고시 및 시도 소방본부 누리집에 공고함. 공고내용 및 공지사항(시험일시, 장소 등)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

※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 방침에 따라 시험 일정이 긴급하게 변경될 수 있음

라. 모든 시험은 우천,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험장소와 일정 등을 공지함

마. 응시자는 시험장 물품 등 파손,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, 소지품 분실 등 시험장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람

바.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하지 않은 응시자의 시험결과는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, 책상, 벽 등에 펼기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

2 답안지 작성 및 부정행위 등 안내

- 가. 개인별 성적은 답안지 전산 판독 결과에 따르며, 답안지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음

나. 답안은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콜라 그 숫자에 “●”로 표기하여야 하며,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때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음

 - 1)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때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함 (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)
 - 2)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판독 결과 등에 대한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

채점오류(귀책 사유) 사례

- ▶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
 - ▶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
 - ▶ 답안지 여백 낙서, 훠손 등으로 채점 불가한 경우
 - ▶ 예비표기 하여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
 - ▶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이외 필기구(연필, 샤프, 적색펜 등) 사용한 경우
 - ▶ 불량 또는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사용으로 마킹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
 - ▶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(■ ■ ■ ■ ■)를 훠손한 경우
 - ▶ 수정테이프 사용 후 번짐, 뜯김 등이 발생한 경우

<보기> 올바른 표기 : ● 잘못된 표기 : ○ × ◇ ● ● ● ● ● ● ● ●

- 1) (필적감정용 기재)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의 필적으로 직접 작성
 - 2) (자필성명) 본인의 한글 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.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불이익(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)을 받을 수 있음
 - 3) (교체답안지 작성) 답안지를 교체하면 반드시 필적감정용 기재란, 자필성명, 응시번호, 생년월일 등을 빠짐없이 작성(표기)해야 하며 작성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함

라.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 모든 통신기기나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문제지 배부 후 발견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됨

- 1) 휴대용전화기, 디지털카메라, MP3 플레이어, 전자사전, 카메라펜, 카메라 안경, 라디오,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, 무선호출기, 이어폰, PDA, 스마트워치, 전자계산기, 전산기기, 테블릿 PC 등
- 2) 통신장비를 소지한 응시자는 시험실시 전 전원을 끈(off) 후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하며,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문제지 배부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.

마. 문제지 배부 후 시험 시작 전에 문제지를 열람하는 행위,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

바. 응시자는 문제지의 과목순서대로 답안지에 표기해야 하며,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때도 답안지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 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람

사. 시험시간 관리의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

아. 시험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자제할 것

※ 배탈·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중단할 때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,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해야 함

자. 답안지에 성명, 생년월일, 응시번호, 시험감독관 서명, 필적 감정용 기재란을 기재하지 않아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무효 답안으로 처리함

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무효답안처리 기준

- 부정행위자 조치: 「소방공무원 임용령」 제51조 준용
- 시험지(문제지, 답안지)가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에 입실하는 행위
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대화하는 행위
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
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-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
-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
- 차. 시험(필기·실기)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함
- 카. 감염병 확산 방지와 안전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응시자(본인)의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시행하고자 함. ※ 코로나19 감염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타. 기타 문의는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필기시험: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☎ 044-205-7287~7294
 - 실기시험: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 ☎ 041-840-6853
 - 인증서 발급: 소방청 119구조과 ☎ 044-205-7618
- <문의방법> (평일 근무시간 : 09:00 ~ 18:00 / 점심시간 제외)

【서식 1】

필기시험 문제문의서

문제문의	성명		응시번호	
연락처	휴대전화			
	전자우편			
응시분야	응시시도			
	응시분야	2022년 인명구조사 1급 인증시험		
문의과목	해당과목			
	문항번호	번		

<출제문제>

<사유 및 관련근거> - 사유 및 관련근거 반드시 기재

<응시자 의견>

【서식 2】

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

1. 접수자 인적사항

시 험 명		응 시 계 급	
성 명		응 시 번 호	
전 화 번 호		휴 대 전 화	

2. 정정 신청 내용

구 분	정정 전	정정 후
성 명		
주 민 등 록 번 호		

3. 정정 사유

4. 첨부: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)

(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전후 사실이 확인 가능할 것)

2022년 월 일

신청자:

서명 또는 인

소방청장 귀하